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51호 2023. 5. 11.(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0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전체 동 전환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사 업무범위 및 선임방법 변경(안 제10조)
- 나.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기금사용 근거 마련 (안 제10조)
- 다. 위원 해촉사항 개정 (안 제22조)
- 라.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 명기 (안 제26조)
- 마. 자치센터 기금 실비 지출가능 대상자에 ‘강사’ 사항 추가 (안 제26조)
- 바. 자치센터 기금 사용 대상에 주민자치회 운영사항 추가 (안 제29조)
- 사. 주민자치협의회 재정적 지원 사항 근거 마련 (안 제35조)
- 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사항 명기 (안 제39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공동체협치과, 전화 560-3023, 팩스 560-27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전체 동 전환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사 업무범위 및 선임방법 변경(안 제10조)
- 나.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기금사용 근거 마련 (안 제10조)
- 다. 위원 해촉사항 개정 (안 제22조)
- 라.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 명기 (안 제26조)
- 마. 자치센터 기금 실비 지출가능 대상자에 ‘강사’ 사항 추가 (안 제26조)
- 바. 자치센터 기금 사용 대상에 주민자치회 운영사항 추가 (안 제29조)
- 사. 주민자치협의회 재정적 지원 사항 근거 마련 (안 제35조)
- 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사항 명기 (안 제3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업무”를 “업무에 대한 협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으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거나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국 근무자나 간사에게 업무량

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임기 종료 후”를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로, “선정할”을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요구를 받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운영은 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제29조제5항 중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회계책임자”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제37조 및 같은 조)을 삭제한다.

제40조 중 “그 이외에”를 “그밖에”으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을 “시행 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정한다”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상한선(제29조 관련)

구분		기 준	사용료 등 (범위 내)	비 고
과목				
각종 시설 (사용료)	다목적 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2시간	3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산정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헬스장)	1개월	20,000원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	1개월	35,000원	

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를 총괄하며 근무

----- 18세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

제10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

1. -----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
시행규칙-----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거나 제7조제1항 각 호

방식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선
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
사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
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
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
다.

② (생략)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주
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
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사 및 사
무국 근무자에게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
른 사무국 근무자나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
여 제29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
정할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위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제26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요구를 받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운영은 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

-----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 등 -----

-----.

<삭 제>

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29조(사용료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약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협약하여 주민자치회 및 -----

-----.

⑥ -----

----- 회계책임자 -----

-----.

<p>제35조(주민자치협의회) ①·② (생략) <u><신설></u></p> <p><u>제6장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 운영</u></p> <p><u>제37조(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구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을 둘 수 있다.</u></p> <p>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u>그 이외에</u>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u>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u></p>	<p>제35조(주민자치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삭제></u></p> <p><u><삭제></u></p> <p>제40조(시행규칙 등) ----- ----- ----- <u>그밖에</u> ----- ----- <u>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u> ----- ----- <u>정하고,</u> <u>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u></p>
---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